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표시 또는 설치해서는 안되는 금지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·운영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 제10항 및 제1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